영통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입주자 모집공고

HYOSUNG Harrington Place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03.06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당 아파트는 2007.09.0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85㎡이하 주택은 「부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합산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 제한사항 제외되는 규정에 의한 분양가산정제 적용되지 않음.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용인시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청약방법에 대해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시어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3.06)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용인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투기 과열지역 차별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1호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6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3.06)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중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시 내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되나 청약시 세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7항2에 의거 2015.03.15이후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 업무는 사업주체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만 할 수 있습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권 전매제한 및 청약 재당첨제한 기간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구분	분양권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전용면적 85㎡ 이하	최초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6개월	당첨일로부터 3년
전용면적 85㎡ 초과	최초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6개월	당첨일로부터 1년

- 용인시 서천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41조의2 및 「주택법시행령」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5.03.25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본 아파트는 당첨일로부터 전용면적85㎡ 이하인 경우3년, 전용면적85㎡ 초과하는 경우 1년간 타 분양주택에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주택과 – 6907호(2015.03.0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356~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20~25층 7개동 총 6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세대 : 207세대(기관추천 특별공급 63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3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63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8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공급번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1층 우선배정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		계	특별공급				일반분양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일반 (기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민영주택	201500169-01	59.9930A	59.9930	23.7392	83.7322	29.1745	112.9167	34.5831	336	33	33	33	10	227	10
	201500169-02	59.8829B	59.8829	23.6980	83.5808	29.1355	112.7163	34.5398	121	12	12	12	3	82	5
	201500169-03	73.2363	73.2363	28.9569	101.8222	35.6326	137.4548	42.2384	183	18	18	18	5	124	7
계									640	63	63	63	18	433	2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세대 / 부가세 포함)

주택형	동·호수 구성	층별 구성	공급세대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입주시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계약시	2차 계약후 정액납부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2015.06.22	2015.09.21	2016.01.20	2016.05.20	2016.09.20	2017.01.20	
59A	101동1호,2호,4호 102동1호,2호,4호 103동1호,2호,4호 104동1호,2호,4호 105동1호,2호,4호	3층	10	196,692,960	143,197,200	339,890,000	10,000,000	17,989,000	27,989,000	27,989,000	27,989,000	27,989,000	27,989,000	27,989,000	83,940,000
		5층	5	196,692,960	149,207,200	345,900,000	10,000,000	1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85,770,000
		6층	5	196,692,960	159,207,200	355,900,000	10,000,000	1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88,800,000
		8층	5	196,692,960	169,207,200	365,900,000	10,000,000	2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91,830,000
		9층~층	25	196,692,960	181,307,200	377,900,000	10,000,000	2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95,460,000
	101동3호,5호,6호 102동3호,5호,6호 103동3호,5호,6호 104동3호,5호,6호 105동3호,5호,6호	3층	1	196,692,960	159,956,800	356,650,000	10,000,000	19,665,000	29,665,000	29,665,000	29,665,000	29,665,000	29,665,000	29,665,000	88,995,000
		5층	1	196,692,960	169,956,800	366,650,000	10,000,000	20,665,000	30,665,000	30,665,000	30,665,000	30,665,000	30,665,000	30,665,000	92,000,000
		6층	1	196,692,960	179,956,800	376,650,000	10,000,000	21,665,000	31,665,000	31,665,000	31,665,000	31,665,000	31,665,000	31,665,000	95,000,000
		8층	1	196,692,960	189,956,800	386,650,000	10,000,000	22,665,000	32,665,000	32,665,000	32,665,000	32,665,000	32,665,000	32,665,000	98,000,000
		9층~층	5	196,692,960	201,956,800	398,650,000	10,000,000	23,865,000	33,865,000	33,865,000	33,865,000	33,865,000	33,865,000	33,865,000	101,600,000
72	101동1층~4층, 102동1층~4층	1층	8	196,692,960	172,256,000	368,950,000	10,000,000	23,065,000	33,065,000	33,065,000	33,065,000	33,065,000	33,065,000	33,065,000	99,200,000
		2층	8	196,692,960	182,256,000	378,950,000	10,000,000	24,065,000	34,065,000	34,065,000	34,065,000	34,065,000	34,065,000	34,065,000	102,200,000
		3층~층	10	196,692,960	192,256,000	388,950,000	10,000,000	25,065,000	35,065,000	35,065,000	35,065,000	35,065,000	35,065,000	35,065,000	105,200,000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지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 확인 주시기 바랍니다.

- 2006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6조(주거전용면적의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은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산정제 적용주택의 총공급액을 기준으로 용도시 분양가상위원회가 의결한 층액방위 내용에 따라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정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제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 및 지하주차장 전용면적 등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한 대지 금액이 상기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하차비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기 기재하며 각 주택형별 마이너스옵션 선택은 청약당첨자 분양 계약시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비용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청약당첨자 분양 계약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 선정합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도시개발구역 지적정리의 요청 및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기타 공용면적 또한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해여 부득이하게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중수는 간접 방식, 중탕,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공급금액의 60%를 기준으로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용 제외한(하도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철근 콘크리트 기준 공정률 3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거 입주하기 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분양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율이 10%에 해당하는 입주자공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보다는 관계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예정 불출일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인정 영업일일 기준으로 합니다.)
- 선납할인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하며 (선납할인율은 공급계약서 참조 요망)
-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취급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감춰 도는 확인결과 명백으로 사기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이 무효로 되며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세대원 중에 있는 자는 특별공급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후 제10항)
- 특별공급 대상자로 등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신청자격별 · 주택형별공급세대수

구분	59A	59B	73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33	12	18	6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17	6	9	3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6	6	9	31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33	12	18	6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10	3	5	18
소계		109	39	59	207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63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3.0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
- 특별공급 주택은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3.06) 현재 이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의2, 제7호 및 제10호),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 특별공급 대상자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3.0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며 만서 혼인신고일기준, 재혼 포함)기준) 동일한 기재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있는 중단기주택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등일)이내 출산자녀의 기혼 중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상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3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입양 지속시 입사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청약가점 적용 배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3.06) 현재 이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의2, 제7호 및 제10호),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 특별공급 대상자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3.0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며 만서 혼인신고일기준, 재혼 포함)기준) 동일한 기재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있는 중단기주택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등일)이내 출산자녀의 기혼 중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상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3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입양 지속시 입사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주자지정기간 개시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주택공급신청자	주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자 본인 포함)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무주택여부확인대상자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일 현재 주택소유자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인정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간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당첨자 미달 시 예비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세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급받은 구비서류 중 주택소유 확인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등 제출하신 서류는 당첨자 발표 시 당첨자 전원에 대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할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에 이의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이어야 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 중 1명이 만 19세 이상인 자 중 1명은 반드시 주택소유 여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합니다.
- ※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청 자료)

구 분	3인 이하	4인 가구	5인 가구
월평균소득액(100%)	4,734,603원이하	5,224,645원이하	5,560,026원이하
배우자 소득 합산(120%이내)	5,681,524원이하	6,269,574원이하	6,672,031원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 * (N–5))
※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 · 비속)이며,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만 19세 이상의 직계 존 · 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기본)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의 과세대상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 · 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 존 · 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 (단, 가구당 월평균 소득 산정시 임신중인 경우 태아 수를 포함)

- 신혼부부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세 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세(부분)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개인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 접수장소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3.06)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순위체를 규정합니다.
- 제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인자(자녀수 무관) 이거나 출산한자 및 입양한 입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이하에 자녀가 있는 자
- 제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인자(자녀수 무관) 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제3항에 따른 수도권 거주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미성년 자녀세대수를 포함한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함
-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3.06)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건에 한하여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음)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로 포함하여 선정함니다.
- 입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의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입양부부의 입신상태가 입주하기 전까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입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 3% 이내) : 19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3.0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로서(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부양받은 입신진단서로 확인 이하등일)이내 출산자녀의 기혼 중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양가족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 및 직계존비속 중 1명을 부양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선정함니다.
-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부양받은 입신진단서로 확인 이하등일)이내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 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양가족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 및 직계존비속 중 1명을 부양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선정함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 : 부양가족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1명을 부양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선정함니다.
-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부양받은 입신진단서로 확인 이하등일)이내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 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양가족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선정함니다.
- 부양가족 명단 등재 기준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부양받은 입신진단서로 확인 이하등일)이내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 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양가족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선정함니다.
- 부양가족 인정기준